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0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김형동・김 웅・金炳旭

안병길 • 이명수 • 이태규

신원식 · 윤주경 · 김용판

김예지 · 윤두현 · 박대수

유창현 • 유한홍 • 최춘식

양정숙 · 윤미향 · 김승수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려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점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 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법률 제17460호 철도의 건설 및 법률 제17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 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 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 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을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 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 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 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

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